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장세구 의원 외 7명

2. 제안이유

- 관련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되었으며,
-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를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제20조제2항)
- 제20조제2항 변경에 따른 제4항 삭제(제20조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 개정법규와의 조문일치를 통한 법령적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